

예 산 총 칙

2015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01,860,383 | 12,055,811 |
| 일반회계 | 375,081,532 | 11,252,446 |
| 특별회계 | 26,778,851 | 803,366 |
| 기타특별회계 | 26,778,851 | 803,366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872,206 | 26,166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841,189 | 25,236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565,718 | 16,972 |
| 주차장특별회계 | 429,879 | 12,896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23,617,110 | 708,513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| 452,749 | 13,582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'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'계속비 사업조서'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626,952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한도액은 9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수 있다.